

의안번호	2217217
의 퇴 인	채현일의원
회 답 일	2026.5.27.
추계번호	26D1189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5,400만원(연평균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177	-	-	177	-	354	71

주: 본 추계는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 시행 이후 결정되는 지원 대상·지원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주소정보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공공부문의 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9조(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주소정보산업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생성·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나 단체를 주소정보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4조(표준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의무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5조(품질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1조(유사 중복 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의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3조(주소정보산업 진흥원의 설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함	의무규정
		국가기관등은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4조(주소정보산업 협회의 설립 등)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선언적·권고적인 성격의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미대상: 시행계획 수립·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현재의 조직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1)」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수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동향 및 우수기업 조사(2026년 예산 280백만원)」를 실시하여 왔으며,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를 2024년부터 실시하여 옴(2026년 예산 200백만원) -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는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내용과 추후 실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구체적인 계획 등이 없는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안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라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주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출연·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연구과제의 선정,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5	안 제9조(주소정보기술의 활용 촉진)	×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시범사업 등의 절차,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기술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2023년 15개 시범사업(예산 21.4억원), 2024년 3개 시범사업(예산 7.7억원), 2025년 2개 시범사업(예산 5.8억원)을 실시한 바 있음

-
-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6	안 제10조(주소정보산업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생성·관리하고 주소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플랫폼구축 범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2023년~2025년)하여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으나, 현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은 행정적 관리 기능(정확한 주소의 부여 및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제정안과 같이 산업적 활용을 위한 플랫폼은 별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개요> ① 개요 ▶(사업명)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기간·예산) '23년~'25년 / 총 33,267백만원(국비 11,924, 지방비 21,343) ▶(구축현황) ①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면 재구축('23~'24년), ②주소정보 제공활용 강화('24~'25년), ③클라우드 전환 및 지자체 데이터 통합('23~'25년) ②「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업무기능 ▶도로명주소 부여,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국가 기초구역 관리 ▶스마트 KAIS (현장조사 업무 지원, 주소정보시설 설치 위치 확인 및 상세정보 조회) ▶주소정보 누리집(도로명주소 검색 및 주소변동 내역 조회, 주소전환 서비스 제공 등)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주소DB 및 오픈API 제공 등) (자료: 행정안전부)
7	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원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8	안 제14조(표준화)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표준을 제정·관리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표준화사업을 추진하여(2026년 예산 200백만원, 민간위탁) <주소정보 표준화 사업 추진현황> ▶('23년) 표준화 로드맵 수립,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관련 표준에 한국의 주소체계반영 ▶('24년) 한국형 주소정보체계의 참조모델 및 활용 모델 도출을 위한 주소정보 데이터 분석 및 주소정보 프레임워크 도출 ▶('25년) 국가표준(KS) 제정을 위한 주소정보 참조 모델 및 데이터모델 표준(안) 개발, 산업 활용표준 관련 주소기반 주차정보 활용 표준(안) 개발, 주소정보 구축 관련 규정 체계 재정립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9	안 제15조(품질인증)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기기·소프트웨어·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품질인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0	안 제1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안에 따라 주소정보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주소정보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지원 대상·지원 범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1	안 제21조(유사 중복 서비스의 개발·제공의 방지)	—	미대상: 공공기관에 의한 중복·유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실태조사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임

12	안 제23조(주소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정안에 따라 주소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가기관등이 진흥원에 출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 “진흥원 설립·시설·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주소정보산업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주소정보의 생산·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범위·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3	안 제24조(주소정보산업협회의 설립 등)	×	주소정보사업자와 전문인력은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현 시점에서 지원 여부·지원 범위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참고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주소기반산업협회가 설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소기반산업협회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는 상황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5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과 2030년에 수립하고 계획 수립 비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를 적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6년 3월 기준, 단위: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700만원, 2030년 1억 7,700만원 등 3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최근 5건) 예산 평균금액(177백만원)³⁾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2]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177	-	-	177	-	3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 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고, 세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3)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자료: prism.go.kr)

-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

-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